

[별표]

공공주택의 종류 및 자격별 자산기준

공공주택 종류 및 자격	적용유형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세대 기준) • 공공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세대 기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의무기간 5년 또는 10년인 유형 (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20% 이하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4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5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5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3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임대유기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세대기준, 단, 청년 특별공급은 제외)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5%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5%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유기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청년 특별공급(본인 기준 및 부모 기준 모두 충족)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9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	-

		건 모두 충족)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5%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5%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 통합 공공임대주택[세대 기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1호가목, 제2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

	지 않는 경우	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국민임대주택(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세대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흥부부(혼인 중인 경우는 세대 기준, 혼인을 계획 중인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 한부모가족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대학생(본인 기준)	우	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없을 것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는 버린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장기전세주택(세대 기준)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를 곱한 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는 버린다)

		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 가 있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 영한 계수를 곱한 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 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 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의 120% 이하(다만,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1) 또는 2)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에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 영한 계수를 곱한 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 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 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하는 버린다)

비고

가) 부동산가액 산출시 본인 기준인 경우는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
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세대 기준인 경우는 해당세대가 소유하
고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건축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
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신
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출생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2)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다) 나)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자산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
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
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라)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기준 중 ‘지역별 전세가격을 반영한 계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주택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를 말한다)의
전년도 연평균전세가격을 전국 전년도 연평균전세가격으로 나눈 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으로 하며, 나눈 값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